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중 소 기 업 제 품 구 매 촉 진 및
판 로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위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따른 상생협력의 유형과 위반행위(안 제17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규정한 상생협력의 유형 외의 추가적인 협력 유형과 상생협력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생협력의 세부 유형과 중대한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하나의 제품에 적용되는 서로 다른 기술이나 품목을 각각 보유한 기업간의 협력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간의 협력을 상생협력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기업간 협약 위반 행위, 기업간 기술탈취 행위 등을 상생협력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함.

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 등(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대상 제품의 기술적 혁신성과 시장 전망에 따른 성장성, 사업계획의 명확성과 이행 가능성,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을 지원대상 선정 기준으로 하고, 이밖에 동 선정 기준 판단 시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정 및 평가 절차를 정함.

다.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대한 권한의 위탁(안 제27조제2항)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해당 제품 목록 정보의 제3자 제공,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선정평가 및 수행평가,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따른 일부 품목 등의 현황 조사 등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함.

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참여자격 및 구매대상 제품 선정기준

등(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 신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대상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자로 하고, 구매대상 제품 선정 시에는 해당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 진출 가능성 등에 따른 성장성, 참여기업의 제품 생산능력, 기타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도록 함.

마.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절차 등(안 제13조의5 신설)

특정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창업자가 동 제품에 대한 현장검증 필요성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현장 검증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및 지정 요건 등(안 제13조의6 신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을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를 “그 밖에 제4호”로 한다.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당해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2. 제13조 각 호의 제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한 제품 중 어느 하나를 개발한

자

②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 기업(또는 기관)의 현황 자료
2.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 및 규격서
3. 제1항의 신청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

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대상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

1. 신청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 진출 가능성 등에 따른 성장성
2. 참여기업의 제품 생산능력, 품질 및 사후관리 방법 등에 따른 안정성
3. 공공조달시장의 우선구매 가능성 등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참여기업과 공공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시범구매제품 계약방법의 특례) ① 법 제14조의3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 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3.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방법 중 시범구매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계약방법
- ②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구매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방법 중의 하나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4(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법 제14조의3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제13조 각 호 제품의 인증 또는 지정 기관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한 제품의 인증 또는 지정 기관
- ②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제1항의 기술개발제품의 인증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 및 계획
 2. 제13조 각 호의 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

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한 제품의 인증 및 지정현황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등 정책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제13조의5(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① 법 제14조의4제1항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지원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2. 제13조 각 호의 제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으로 고시한 제품 중 어느 하나를 개발한 자

② 제1항의 신청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현장검증이 필요한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현장 검증을 지원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현장검증을 요청 받은 경우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의4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판로지원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사무공간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의2(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제17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서로 다른 기술 또는 품목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2.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과의 협력

②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에서 “상생협력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협약(이하 이 항에서 “협약”이라 한

다)상의 의무를 특별한 사유없이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협약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참여기업간 기술탈취 행위가 발생하는 등 기술보호 및 보안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건전한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17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 제4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제품의 혁신성과 추후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성장성이 충분할 것

2.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이행 가능성이 있을 것

3. 협력하는 대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 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인해 기대되는 성과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4. 그 밖에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참여기업간 기능과 역할 분담 등에 관한 협약서

3. 제1항의 선정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참여 기업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수행 평가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의 성과와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대상의 공공조달시장 납품 성과와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계속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중간점검

2. 공공조달시장 납품 실적, 참여기업간 성과 배분, 협약 이행 결과를 최종 평가하는 완료평가

3. 지원 대상의 참여 성과와 상생협력의 지속적인 필요 여부를 평가하는 연장평가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지원 대상으로 하여금 중간 이행 및 최종 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4(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과 비중을 고려하여 상생협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이하 “상생협력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을 구매할 시에는 고시하는 비중 내에서 입찰 참여자격을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만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해당 제품의 목록을 구매정보망을 통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 지원 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투자,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이하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으로 한다.

3.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 관한 현황 정보 및 동 제도에 따른 상생
협력 활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목록 정보의 제공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 수행평가 및 사후관리
5.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에 대
한 기본 현황 및 공공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조사
6.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
7.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소재·부품의 원산지 및 생산 업체에 대
한 정보의 수집·관리

부 칙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4. <u>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u> ② (생략) <u><신 설></u>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당해 조달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u> 5. <u>그 밖에 제4호</u> ----- -- ②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u>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 다)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2. 제13조 각 호의 제품 또는 중소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 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한 제품 중 어느 하나를 개발한 자

②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 기업(또는 기관)의 현황 자료

2.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 및 규격서

3. 제1항의 신청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

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정보망을 통

<신 설>

해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대상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

1. 신청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 진출 가능성 등에 따른 성장성

2. 참여기업의 제품 생산능력, 품질 및 사후관리 방법 등에 따른 안정성

3. 공공조달시장의 우선구매 가능성 등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참여 기업과 공공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시범구매제품 계약방법의 특례) ① 법 제14조의3제2

<신 설>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 공급자계약

3.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방법 중 시범구매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계약방법

②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구매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방법 중의 하나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4(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법 제14

조의3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제13조 각 호 제품의 인증 또는 지정 기관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한 제품의 인증 또는 지정 기관

②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제1항의 기술개발제품의 인증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 및 계획

2. 제13조 각 호의 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한 제품의 인증 및 지정현황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

<신 설>

도의 활성화 등 정책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제13조의5(현장검증형 기술개발
제품 구매 지원) ① 법 제14조
의4제1항의 현장검증형 기술개
발제품의 구매 지원에 신청하고
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
청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1.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
다)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
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
업자

2. 제13조 각 호의 제품 또는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현장검증
형 기술개발제품으로 고시한
제품 중 어느 하나를 개발한
자

② 제1항의 신청기업은 중소벤
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에 현장검증이 필요한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

<신 설>

항의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현장 검증을 지원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현장검증을 요청 받은 경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현증검증형 기술개발 제품 구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기술개

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의4에 따른 현장검
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의 구
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
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판로
지원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사무공간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2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중소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의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제17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서로 다른 기술 또는 품목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2.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공

<신 설>

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과의 협력

②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에서 “상생협력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협약(이하 이 항에서 “협약”이라 한다)상의 의무를 특별한 사유없이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협약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참여기업간 기술탈취 행위가 발생하는 등 기술보호 및 보안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건전한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17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제품의 혁신성과 추후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성장성
이 충분할 것

2.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이행
가능성이 있을 것

3. 협력하는 대기업 등의 역할
과 참여 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인해 기대되는 성과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4. 그 밖에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으로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신청하
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
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
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참여기업간 기능과 역할 분
담 등에 관한 협약서

3. 제1항의 선정기준에 부합함
을 증명하는 자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참여기업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수행 평가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의 성과와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대상의 공공조달시장 납품 성과와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계속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중간점검

2. 공공조달시장 납품 실적, 참여기업간 성과 배분, 협약 이행 결과를 최종 평가하는 완료평가

3. 지원 대상의 참여 성과와 상생협력의 지속적인 필요 여부를 평가하는 연장평가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지원 대상으로 하여금 중간 이행 및 최종 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협력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사후

<신 설>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4(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과 비중을 고려하여 상생협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이하 “상생협력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을 구매할 시에는 고시하는 비중 내에서 입찰 참여자격을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만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해당 제품의 목록을 구매정보망을 통해 공공기관

	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 지원 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투자,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판로 지원기관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1조(판로 지원기관 등)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설>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2. (생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27조(권한의 위탁 등) ① (생략)	제27조(권한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 ----- ----- ----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

제품 판매회사(이하 “중소기업
제품 판매회사”라 한다)에 위탁
한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
회사(이하 “중소기업제품·벤
처기업제품 -----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및 대
기업 등에 관한 현황 정보 및
동 제도에 따른 상생협력 활
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목
록 정보의 제공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
력 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신
청·접수, 지원대상 선정에 위
한 평가, 수행평가 및 사후관
리

5.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에 대한 기본 현황 및 공
공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중 등에 대한 조사

6.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

7.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③ <u>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제 2항제2호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려면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u>	<u>소재·부품의 원산지 및 생산업체에 대한 정보의 수집·관리</u> ③ <u>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u>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2) 481 - 8919